

# 성남시의회위원의정활동비와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 관 한 조 례 중 개 정 조 례 안 검 토 보 고

|            |     |
|------------|-----|
| 의 안<br>번 호 | 882 |
|------------|-----|

2000. 2. 16.

## 1. 제안이유

- 본 조례의 개정은 지방자치법 ( 법률 제6002호 ) 및 동법 시행령 ( 대통령령 제16672호 ) 의 개정으로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와 회기수당 및 여비 등의 지급기준이 상향조정 됨으로써 본 조례를 개정하여 상위 법령에 부합되도록 하고 실비보상을 최소한 현실화 하고자 하는 것 임.

## 2. 주요내용

- 본 조례의 명칭과 제1조 및 제3조의 「회의수당」 을 「회기수당」 으로
- 제2조 제2항의 의정활동비를 「 350,000원 」 에서 「 550,000원 」 으로
- 제3조 제2항의 회기수당을 「 50,000원 」 에서 「 70,000원 」 으로 인상 하는 것으로써

## 3. 검토의견

-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, 회기수당 및 여비의 지급 기준이 상향조정 됨으로써 본 조례를 개정하여 상위 법령에 부합되고 수당지급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이며 의원 사기양양에도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하는 매우 적절하고 유익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.